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5.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회부경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04.26.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04.30.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597호).

##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안 제명)
- 나.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4조, 제5조)
- 라.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의결, 간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 유지의 의무를 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2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위원회 운영 예산 4,200천원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3.18. ~ 2021. 4. 7.)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위임 사항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는 2013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 중.
- 조례의 제명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인 기존 조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10명 이내의 위원에서 경찰공무원 및 아동·사회복지 등의 전공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1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시회의 개최 시 기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변경함.
- 안 제8조는 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임.
-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